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 39 호
 등록년월일 1953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편집인 공보실 장 희철호
 인쇄 국제출판인쇄주식회사

차 례

△조례 13169

- 제 450 호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증 개정
- 제 451 호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증 개정
- 제 452 호 서울특별시립 생생원 설치조례증 개정
- 제 453 호 서울특별시 구·동 파월장병 지원 위원회 조례증 개정

△규칙 13177

- 제 593 호 길음택지 조성사업지구 지적 정리 위원회 규칙
- 제 594 호 도로 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규칙증 개정
- 제 595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증 개정
- 제 596 호 서울특별시 직제증 개정
- 제 597 호 서울특별시 가로명 제정 위원회 규정
- 제 598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위원회 규칙
- 제 599 호 서울특별시 경찰지사 및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위치와 관할 구역의 전증 개정
- 제 600 호 서울특별시 법제심의 위원회 규칙증 개정

△헌령 13186

- 제 223 호 서울특별시 경찰서 및 소방서 사무분장 규정증 개정

△사령 13187

△고시 13197

- 제 1067 호 결핵 및 부루세라병검색 "지침"

13167

2275

(2) 차 래

- 제 1068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1069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1070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1071호 사료성분 등록 개신
제 1073호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74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75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1076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1077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78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79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80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81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82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83호 동사무소 위치 변경 고시

△공 고..... 13205

- 제 142 호 시유건물 철거조건부 매각처분
제 143 호 환지처분
제 144 호 토지 세목 공고(정정)
제 145 호 제도 재산(차량·비품집기)매각
제 146 호 도로운송 차량의 임시 검사 실시
제 147 호 성산토지 구획정리지구 지구체 일부 변경
제 148 호 제도 재산(시설·차량·비품집기)매각
제 149 호 환지처분 일부변경
제 150 호 세목 공고
제 151 호 세목 공고
제 152 호 가축인공 수정사 자격시험 실시
제 153 호 세목 공고

- 제 154 호 시유건물 철거조건부 매각 처분
 - 제 155 호 자동차 운수사업소 종업원 모집
 - 제 156 호 체도 재산(토지)매각
 - 제 157 호 세종로 지하도 공사 준공에 따른 전차운행체통 변경
 - 제 158 호 인구센서스에 대한 시장 담화문
 - 제 159 호 체도 재산(시설·차량·비품집기)매매계약체결 및 유찰재산 책임찰
 - 제 160 호 환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 제 161 호 환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 △광 고 13226
1. 제3회 올종 위험률 취급주임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2. 직인 개각 통보

조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洞名稱 및 區域劃定 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9月 2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50號

서울特別市 洞名稱 및 區域劃定條例中 改正條例

서울特別市 洞名稱 및 區域劃定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中 다음과 같이 한다

區 名	洞 名	地	番
永登浦區	新吉洞	74	
	夕	131	
	夕	山 28號 1	

13169

2276

永登浦區	新吉洞	山 24의1 131의1 127의2 126의1 126의7 126의8 126의9 129의5 129의6 126의10 126의11 130의1 130의3 山 25中 山 20의1 山 20의4 山 20의5 山 24의18 山 24의17 山 24의3 山 24의7 山 24의8 山 24의9 山 24의10 山 24의11 山 24의13 山 24의4 山 24의14 山 24의12
------	-----	--

永登浦區	新吉洞	山 24의15 山 24의16 130의2 127의1 129의3 129의4 129의2 129의1 山 24의2 山 17의2 山 20의10 山 20의9 山 20의7 山 20의6 山 20의8 山 20의3 山 23 山 20의2 山 24의5 山 24의6 山 21의2 山 22 山 21의1 山 8의3 84의2 84의1 山 8의5 79의3 83의1
------	-----	---

13171

2277

永登浦區	新吉洞	83
		83의2
	〃	79의6
	〃	82의5
	〃	82의7
	〃	84
	〃	82의31
	〃	82의24
	〃	82의25
	〃	82의23
	〃	82의6
	〃	82의30
	〃	81의1
	〃	79의8
	〃	79의9
	〃	79의7
	〃	79의2
	〃	82의11
	〃	79
	〃	80
	〃	79의4
	〃	79의5
	〃	山3의4
	〃	79의1
	〃	79의10
	〃	78의1
	〃	77의2
	〃	82의4
	〃	76의2

永登浦區	新吉洞	81의2 81의3 77의6 山3의5 77의9 77의8 77의7 77의1 78의2
------	-----	--

를 永登浦區大方洞으로 編入

區名	洞名	地番
永登浦區	大方洞	115의1중 208의1중 119의12 119의4 119의18 119의16 119의17 119의5 119의15 119의11 9 119의10 119의13 119의14 115의2

를 永登浦區 新吉洞으로 編入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 徵收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9月 16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51號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 徵收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 (賦割制) ① 觀覽料를 徵收하는 有料入場의 境遇는 觀覽料收入額의
2割의 該額을 使用料로 하고 觀覽料收入額이 基本額에 未達할때는 基
本額을 徵收한다

② 前項의 賦割제에 依한 1回使用料 總額20萬원을 超過할때는 體育競技에
限하여 第16表에 依한다

③ 前1項에 依한 基本額徵收에 있어 무로競技는 2割增額, 高等學校以下の
競技는 2割引한다

第1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條 (使用料의 減免) 市長이 公用, 公益또는 其他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때는 使用料를 減免할수 있다

다만 무로競技時의 使用料의 減額은 5割을 超過하지 못하며 特別한 事由
라 함은 따로 規則으로 定한다

使用料表中 다음과 같이 한다

第4表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野球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為하여 利用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다

區 分	時 間	料 金
團體가 練習을 為하여 利用할때	2時間當	600원

使用料表 第八의 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各競技場에서 商行爲를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과 같다

種 別		區 分	期 間	基 本 額	備 考
T V 中 繼 放 送	푸로레스팅	國際競技 國內 ◇	1回	20,000원 5,000	
	푸로권투	國際 ◇ 國內 ◇	◇	20,000 5,000	
	籃 球	國際 ◇ 國內 ◇	◇	12,000 3,000	
	野 球	國際 ◇ 國內 ◇	◇	12,000 3,000	
	蹴 球	國際 ◇ 國內 ◇	◇	12,000 3,000	
	排 球	國際 ◇ 國內 ◇	◇	6,000 1,500	
	아마추어권투	國際 ◇ 國內 ◇	◇	8,000 2,000	
	其 他 競 技	國際 ◇ 國內 ◇	◇	2,000 500	
映 廣 摄 影		1回當 10,000원			
中 繼 放 送		TV中繼料의 半額으로 한다			
競 技 摄 影		TV中繼放送金額으로 한다			
宣傳·廣告·揭示·展覽·物件貸與		契約者の 年間計劃書에 依한 總收入金의 2割			
其 他 行 為					

第十一 附屬設備使用料

(1) 運動場(體育館包含)의 附屬設備를 使用할때에는 下表에 依하여 別途
徵收한다

第 十 七 表	種 别	區 分	金 額	摘要
	野球場라이더設備 使用料	1回	電氣使用料基本額 25,000원 競技日의電 氣使用料(官許料金)	
	擴聲機	1回	500원	
	競技場照明	KW	官許料金	
	冷房	〃	〃	
	난방	1時間	1,700원	1時間以内일 때에 도 1時間으로看做한다

附 則

이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생생원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서울특별시조례제452호

서울특별시립 생생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생생원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21세부터 64세 미만”을 “18세부터 64세 까지로”한다

제2조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산 31의 7”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산동 산 6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구·동 파월장병지원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서울특별시조례제453호

서울특별시 구·동 파월장병 지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구 동 파월장병지원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간사는 서울특별시 공보실장, 구공보개장과 동 사무장이 된다”
을 “서울특별시 사회과장 구사회과 후생과장 동 사무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규칙

吉音宅地造成事業地區 地籍整理委員會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9月 2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93號

吉音宅地造成事業地區地籍整理委員會規則

第1條 (目的) 吉音宅地造成事業地區의 地籍整理 및 이로 因하여 蒸起되는
地籍에 關한 事項을 處理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職務) 委員會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地區境界 確定 및 錯誤 是正에 關한 事項

2. 地區內 地籍錯誤是正 및 整理에 關한 事項

3. 地籍錯誤로 因하여 蒸起된 諸般問題處理에 關한 事項

第3條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委員若干人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都市計劃局長이 되며 委員은 底務課長, 稅政課長, 區劃整理
課長, 底務課處分係長, 稅政課地籍係長, 區劃整理課換地係長이 된다

第4條 (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統理한다

② 委員長 有故時에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委員이 그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 (議事)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召集하고 그議長이 된다

② 會議는 委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하며 可
否同數인 情況에는 委員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第6條 (關係人の出席) 委員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公務員 및 關係人을 會議에 出席시켜 그 意見을 繼取할 수 있다

第7條 (幹事와 書記) 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為하여 康務課와 稅政 課職員中에서 각각 幹事1人과 書記若干人을 둔다

② 幹事와 書記는 委員長이 任命한다

③ 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技術問題에 關하여 委員을 補佐하며 書記는 會議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第8條 (會議錄作成) 會議를 開催하였을 때에는 會議錄을 備置하고 會議錄에는 參席委員이 署名하여야 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道路交通에 依한 制限指示에 關한 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西紀 1966年 9月 5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특별시規則第594號

道路交通法에 依한 制限指示에 關한 規則中 改正

三. 運轉者에 遵守事項 “차”項 다음에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카. 諸車 運轉者는 開門發車運轉(停車前 開門包含)을 할 때는 運轉免許

에 對하여 行政處分 (免許停止處分)을 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특별시규칙제59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3급을류단의 “지방행정사무관 186” 을 “지방행정사무관 189”로 “지방농업기과 2”를 “지방농업기과 1”로 “3급

율류 계 317"을 "3급 율류 계 319"로 한다

5급잡류란의 "지방행정서기 1116"을 "지방행정서기 1115"로 "5급갓류계 1679"를 "5급갓류계 1678"로 한다

5급율류란의 "지방행정서기보 1559"를 "지방행정서기보 1558"로 "5급율류 계 2416"를 "5급율류 계 2415"로 한다

"기능직 계 843"을 "기능직 계 832"로 "고용원 계 1062"를 "고용원 계 107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특별시규칙제596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기획관리관)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 (기획관리관) 1) 기획관리관 밑에 기획관·법무관·통계관과 감사관을 두고

기획관리관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기획관과 감사관은 행정서기관으로 법무관은 법무관 또는 행정서기관 통계관은 통계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 5항을 다음과 같이 가한다

5) 감사관 밑에 감사제1담당관 감사제2담당관과 감사제3담당관을 두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제1담당관

가. 감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나.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

(14) 규칙

다. 각종 감사자료의 모집

2. 감사제2담당관

가. 회계감사와 통감사에 대한 자료모집 및 계획수립

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등 외부감사에 대한 수참준비 및 사후처리

3. 감사제3담당관

가. 비위판단(전정 투서 기타)조사

나. 비위공무원의 조사 및 징계체청(제 복무에 관한사항)

다. 특명감사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내무국) 1) 내무국에 총무과 행정과 인사과와 예산과를 둔다

2)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행정과장과 인사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예산과장은 재경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 2 (감사과)를 삭제한다

제30조 (청소제1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청소제1과) 1) 청소제1과에 서무계 작업계와 장비계를 두고 계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청소제1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호와 같다

1. 서무계

가. 국 소관행정의 종합조정

나. 청소관계 법규정비

다. 진개차량의 각종 사고보장

라. 오물수거 수수료 과징

마. 절개매각대 수수료 과징

바. 청소장비 및 용품구입

사. 파내 서무 및 국내 타파 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작업계

가. 진개처리 및 처분장 조정

나. 청소구역 채정

- 다. 오물 불법처분 감시 단속
- 라. 청소일부 감독
- 마. 오물 취급업 허가
- 바. 시민 청소관련의 계몽
- 사. 진개수거에 관한 청원서 처리

3. 장비계

- 가. 청소차량 관리 운영
- 나. 기계 기구류 계량 수선
- 다. 수하차와 관리 운동
- 라. 청소차량 대체제회
- 마. 청소차량 및 기계창고의 시설 및 관리
- 바. 청소차량등 유류 배정 및 조정
- 사. 살수차 운영 관리 및 배정

부 칙

이 규정은 서기 1966년 9월 17일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 가로명 체정 위원회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특별시규칙제597호

서울특별시 가로명 체정 위원회 규칙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의 주요가로에 대한 명칭을 체정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가로명 체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掌한다

- (1) 가로명체정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 (2) 가로명 체정안의 심의 의결
- (3) 기타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16) 규칙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3) 위원은 사학자3인, 언론인2인, 법조인2인, 문인2인, 경제인2인과 일반시민3인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소위원회 구성) (1) 위원회에 상정할 제안건의 예비심사와 시민작성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관과 각국장이 된다

제6조 (소위원회 직무)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掌한다

(1) 가로명제정시안의 작성

(2)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자료의 결정

(3) 기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7조 (의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2) 의사는 계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의견조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소속 각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내무국 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행정과 시정연구체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 自動車 運轉免許試驗委員會 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9月 30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98號

서울特別市 自動車 運轉免許試驗委員會規則

第1條 (目的) 道路交通法 第55條 및 同法施行令 第39條 乃至 第45條에 依한 自動車 運轉免許試驗事務의 適正을 期하기 為하여 서울特別市 自動車 運轉免許試驗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條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1人과 委員 3人以上 6人 以內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警察局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交通課長이 된다

③ 委員은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中에서 市長이 委嘱한다

1. 工業高等學校以上 卒業者로서 在學中 機械에 關한 學科를 修習하고 自動車 構造 및 取扱方法 教習에 1年以上 從事한 者

2. 道路運送車輛法 第12條에 依한 自動車檢查公務員

3. 自動車交通에 關한 業務를 擔當하는 警察公務員

4. 自動車構造 및 取扱方法에 權威있고 專門的인 知識을 가진者

第3條 (職能) 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運轉免許試驗實施計劃樹立

2. 筆記試驗問題出題

3. 筆記試驗 및 技能試驗實施

4. 其他試驗施行에 關한 事項

第4條 (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事務를 統轄하여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때에는 그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 (委員의職務) 委員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試驗事務를 處理한다

第6條 (會議 및 議決) ①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에는 이를 召集하고 委員長이 그 議長이 된다

② 會議는 在籍委員 3分의 2以上의 出席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③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搶選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7條 (委員의責任) 委員은 그職務에 關하여 知得한 機密을 漏泄하거나
其他 試驗의 公正을 阻害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 (委員會事務의處理) ① 委員會의 庶務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為
하여 幹事1人과 書記2人을 둔다

② 幹事는 免許擔當警衛로 補하고 書記는 免許에 對한 庶務를 取扱하
警查 또는 巡警으로 補한다

第9條 (手當支給) 筆記試驗問題의 出題 試驗全般에 關한 監視 答案紙의 採
點을 為하여 職務에 從事한 委員에게 豫算의 範圍內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에게는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10條 (運營細則) 이 規則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따로 委員長이 定한다

附 則

이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함

서울特別市 警察支署 및 警察官派出所의 名稱位置와 管轄區域制定의 件中 改
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9月 30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99號

서울特別市 警察支署 및 警察官派出所의 名稱位置와 管轄區域制定의 件中 改
正規則

警察支署 警察官派出所의 名稱位置와 管轄區域 制定의 件中 다음과 같이 改
正한다

名稱變更書

管轄署	名稱	
	新	舊
東大門署	昌德宮派出所	昌德宮支署
永登浦署	五峰派出所	五峰支署
夕	陽東派出所	陽東支署
夕	大林派出所	大林支署
夕	新東派出所	新東支署
夕	梧柳洞派出所	梧柳洞出張所
城東署	大旺派出所	大旺支署
夕	彦州派出所	彦州支署
城北署	三陽派出所	三陽支署
夕	長位派出所	長位支署
夕	孔陵派出所	孔陵出張所
淸涼里署	面牧派出所	面牧支署

附 則

이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특별시 법제 심의 위원회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서울특별시규칙제600호

서울특별시 법제 심의 위원회 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법제 심의 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내무국장”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훈령

◎서울特別市訓令第223號

警 察 局 長
警 察 署 長
消 防 署 長

서울特別市 警察署 및 消防署 事務分掌規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西紀 1966年 9月 30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 警察署 및 消防署 事務分掌規程中 改正

서울特別市 警察署 및 消防署 事務分掌規程中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 “搜查班”을 “庶務班”으로하고 “搜查班” 다음에 “取調班”을挿入한다

同條 “搜查班”을 “庶務班”으로하고 “搜查班” 다음 “庶務”削除한다

同條 “搜查班” 第十一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十一 告訴 告發 認知事件 接受 및 下命에 關한 事項(各班別 下命限)

同條 “搜查班” “記錄”을 削除하고 “搜查班” “記錄” 第一 다음과 같이 한다

十二 記錄室 運營에 關한 事項

同條 “搜查班” “鑑識”을 削除하고 “搜查班” “鑑識”

第一號 및 第二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十三 被疑者 寫眞管理에 關한 事項

十四 現場鑑識活動에 關한 事項

同條 “搜查班” “鑑識” 第二號 다음 欄에 “取調班”을挿入한다

同條 “搜查班” “民願取調”를 削除하고 “民願取調” 第二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二. 犯罪搜查取調 및 事件記錄作成에 關한事項

同條 “搜查班” “一般取調” 및 第一號 一般事件(刑法 및 特別法犯) 取調에 關한 事項”을 削除한다

同 條 刑事第一班 第三號 “贓物搜查의 專權 및 手配에 關한 事項”을 刪除
하고

同 條 刑事第三班에 第三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三. 贓物搜查의 專權 및 手配에 關한 事項

附 則

이 規程은 1966年 10月 4日부터 施行한다

사령

◎서기 1966년 9월 1일

김관우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산업국 상무과 근무를 명함

김건식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수도국 수원파 근무를 명함

충남해덕군 전만표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공보실장 총무과 지방행정사무처 유판용

정직을 면함

13187

(22) 사명

내무국총무과 지방행정주사	박	희	중
내무국총무과 지방행정주사	강	택	기
내무국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용	의
내무국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최	용	운
공보실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기사	신	정	대
지방보건기좌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기사	윤	봉	덕
위생시험소 세균혈청파장에 보함			
지방보건기좌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위생시험소 위생파학과장에 보함			
서산군	김	상	순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보건사회국 사회과 근무를 명함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원	송	병	종
농림부 전출을 명함			
토목시험소 토목기좌	김	진	우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토목시험소 토질과장에 부함			
동부건설사업소 토목기좌	정	필	현
지방토목기좌에 임함			
동부건설사업소장에 보함			
재무국회계과 지방행정사무관	임	병	도
본직을 면하고 겸직에 전임함			

재무국회계과 지방행정사무관 경	필	호
본직을 면하고 경직에 전임함		
영등포구보건소겸성복구 지방행정사무관 최	종	필
본직을 면하고 경직에 전임함		
강원도 지방재경주사보 경	병	덕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재경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산업국 양정과 근무를 명함		
노량진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보 라	복	균
노량진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 손	윤	익
노량진수원지사무소 지방화공기사보 민	만	식
노량진수원지사무소 지방기계기사보 최	성	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2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타	화	식
노동청 전출을 명함		
	허	만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섭
7호봉을 급함		
재무국 회계과 근무를 명함		
지방약무기사보에 임함	경	정
6호봉을 급함		화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9월 2일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토목기정 주	우	권
시설부기감에 임함		
3호봉을 급함		

(24) 사 행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장에 보함

◎서기 1966년 9월 3일

종로구보건소 지방재경사무관 조 백 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5일

영동포병원 지방약무기사 이 영 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10일

감사과장 행정서기관 손 석 모

기획관리관 직무대리에 보함

관광과선전체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판 영

기획관 직무대리에 보함

인사과전형체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진 원

법무관 직무대리에 보함

총무과통계체장 지방재경사무관 박 창 권

통계관 직무대리에 보함

관리과 기계기원 조 병 울

제신부 전출을 명함

◎서기 1966년 9월 13일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기계기원보 한 상 억

마포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 박 재 식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기 1966년 9월 15일

윤 두 영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농촌지도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예산과경감사과	지방조무수(타자)	박	미	자
기획관보좌를 명함				
행정과	지방조무수(타자)	박	종	답
보건사회국 사회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경	옹	기
지방사제주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박	명	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관광운수국차량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이	체	호
양평군 전출을 명함				
◎서기 1966년 9월 17일		김	이	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감	체	양
내무국 인사과 보임계장에 보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박	수	복
소송담당관에 보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26) 사명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호봉을 급함

내무국 감사과 제2계장직무대리를 명함

이 규 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내무국 총무과 관리체장직무대리를 명함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보 최 중 육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영등포병원 지방간호사보 이 경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20일

안 경 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수의원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월 30원을 급함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최 상 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관광운수국 운수행정과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9월 22일

보육병원 지방행정서기보 이 종 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토목시험소 지방행정주사 안년경

원에 위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28일

중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하인근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기 1966년 9월 1일

사회파견청소과 지방행정서기 이재준
경직을 면함지방행정서기보 김창순
복선동 근무를 명함창상선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노해출장소 근무를 명함

황상선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노해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9월 1일

배종수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7호봉을 급함
마포구청소과 근무를 명함권등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7호봉을 급함
서교동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9월 1일

對相結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28) 사령

한강로3가동 근무를 명임

◎서기 1966년 9월 5일

서선동 지방행정서기보 尹 基 文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종암동 지방초무보조수 李 忠 浩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간호기원보 이 익 외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간호기원보 이 구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간호기원보 김 정 자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5일

문계동 지방행정서기보 鄭 基 元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6일

서빙고동사무장 지방행정주사 吳 鵬 申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7일

삼선제1동 지방행정서기 조 용 운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8일

이태원1동 지방조무보조수 閻 炳 再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효로1가동 지방조무보조수 高 東 益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9일

서계동 기한부공무원 奇 鐘 老

기한부만료로 인하여 그직을 면함

지방행정서기보 金 秀 男

지방공무원법 제65조 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을 명함

원효로2가동사무장 지방행정주사 金 明 傲

지방공무원법 제66조 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10일

노래출강소 지방행정서기보 경 병 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12일

원효로1가동 지방행정서기보 李 昌 輓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15일

박 종 승

기한부 공무원(유영재의 병역 의무·기간중)을 명함

5급 율류 조건부 호봉(월수당)을 급함

송천동 근무를 명함

이 청 호

조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구로 2동 근무를 명함

정 계 열

조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영등포 1동 근무를 명함

김 상 천

조전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30) 사령

양평 1동 근무를 명함

이 용 규

조선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노량진동 근무를 명함

길 행 진

조선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대림동 근무를 명함

김 형 국

조선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신림동 근무를 명함

성 옥 해

조선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노량진동 근무를 명함

이 역 술

조선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영등포 2동 근무를 명함

이 종 옥

조선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흑석 2동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9월 19일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문 철 주

월에 위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27일

성북구남암동 지방행정서기 이 용 길

월에 위하여 그 직을 면함

[]

◎서울특별시고시제106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 실 시 목 적 전천한 낙농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결핵 및 부루세라병을 검색함
2. 실 시 지 역 서울특별시 일원
3. 실시대상의 가축명 유우
4. 실 시 기 간 1966년 9월 20일) 1개월간
 1966년 10월 20일)
5. 기 타 검색기간중 가축방역판이 각 사육장에 출장하여 실시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1068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 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 해제지

(32) 고 시

임야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면적	토지 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영등포	봉천	84—4	임야	0.6211	0.6211	0.6211	—	서울특별시 문구 강현동 23-252	경홍진

2. 해제사유

본 신청지는 1937년도에 사방 지정한 임야로서 산림조성보다 타용도로 이용함이 효과가 더 큰것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69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 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 해제지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면적	토지 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영등포	후석	79-89	내	0.0306	0.0306	0.0306	0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동산 12	강덕성

2. 해제사유

본래지는 1954년도에 사방지로 지정하고 1953-1954년도에 사방 시공한 지내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산림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이 타당하여 지정의 목적 달성을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70호

사방 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 시설지를 해제 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 해제지

임 야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시 설	해 제	잔 면적	토 지 소 유 자	
구	동	지번			면적	연적		주 소	성 명
영등포	양화동	4-1	임야	1.7000	정	정	정	경기도인천시 인현동 4	장세령
〃	〃	4-4	〃	0.1500	0.1500	0.1500	〃	〃	〃
〃	〃	4-11	〃	0.2800	0.2800	0.2800	〃	〃	〃
계		3필		2.1300	2.1300	1.1214	1.0016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5 및 1964년도에 토사유출방지와 도시미화를 위한 사방시설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에 의거 산림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도가 큼으로 사방시설의 목적 달성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71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개신하였음을 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사료성분 등록사항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공장 주소	체 표 자		사 료 의			사료의 성분량	유효기간
			성명	종류	명칭	용도			
	서부사료 마포구 문구	서대 문구		산란계	산란용	산란계	조단백 조지방	15이상 2.5이상	66.9보터 68.9까지
32	공 사	서교동창천동 166의718-42	성규봉	배합 사료	배합 사료	용	조섬유 조회분	7이하 11이하	

◎서울특별시고시제1073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34) 고 시

서기 1966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 | | |
|-----------|------------------------|
| 1. 공사시공로선 | 돈암동—수유리간 도로포장공사(3차) |
| 2. 공사의종류 | 포장공사 |
| 3. 착공년월일 | 1966년 9월 10일 |
| 4. 준공년월일 | 1966년 10월 30일 |
| 5. 총공사비 | 7,320,000원 |
| 6. 부담금총액 | 4,758,000원 |
|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
| 8. 기타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

◎서울특별시고시제1074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 | | |
|-----------|------------------------|
| 1. 공사시공로선 | 제2한강교—물래동간 |
| 2. 공사의종류 | 도로포장공사 |
| 3. 착공년월일 | 1966년 6월 19일 |
| 4. 준공년월일 | 1966년 10월 15일 |
| 5. 총공사비 | 26,819,667 |
| 6. 부담금총액 | 17,432,783원 |
|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
| 8. 기타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

◎서울특별시고시제1075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 소재지

임 야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면적	토지 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성북	정릉	87-120	임야	정	0.0620	0.0620	0.06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가 100	손경율
		87-129	〃	〃	0.1000	0.1000	0.100		
계	2필				0.1620	0.1620	0.1620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7년도 사방지정지로서 지폐(地被)가 안정된 사업성공지로서 지정의 목적 달성을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76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 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장 김 현 속

1. 해제지

임 야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면적	토지 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영등포	상동	66-9	임야	정	1.6729	1.6729	1.6729	종로구 종로3가 40	이정경
		66-10	〃	〃	1.4316	1.4316	1.4316		
		66-12	〃	〃	0.7108	0.7108	0.7108		
계	3필				3.8223	3.8223	3.8223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6년도에 사방 지정지로 지정하고 1956—1957년도에 사방 시공하여 지폐가 안정된 지대로서 타용도로 이용이 불가피함에 지정의 목적 달성을 해제함

(3 6)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077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
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 | | |
|-----------|------------------------|
| 1. 공사시공로선 | 서대문—홍제동간 |
| 2. 공사의종류 | 홍제동—녹번동간 도로 포장공사 |
| 3. 착공년월일 | 1966년 6월 20일 |
| 4. 준공년월일 | 1966년 8월 14일 |
| 5. 총공사비 | 9,913,681원 |
| 6. 부담금총액 | 6,443,892원 |
|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해구역 일원 |
| 8. 기타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

◎서울특별시고시제1078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
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 | | |
|-----------|------------------------|
| 1. 공사시공로선 | 홍제동—녹번동간 |
| 2. 공사의종류 | 도로포장공사(2차) |
| 3. 착공년월일 | 1966년 8월 31일 |
| 4. 준공년월일 | 1966년 10월 19일 |
| 5. 총공사비 | 3,138,980원 |
| 6. 부담금총액 | 2,040,337원 |
|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해구역 일원 |
| 8. 기타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

◎서울특별시고시제1079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 공로선 흥체동—녹번동간
2. 공사의 종류 도로포장공사(제3차)
3. 착공년 월 일 1966년 9월 9일
4. 준공년 월 일 1966년 9월 30일
5. 총공사비 4,144,772원
6. 부담금총액 2,694,101원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80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 공로선 원효로—중림동간
2. 공사의 종류 도로포장공사(제1차)
3. 착공년 월 일 1966년 7월 30일
4. 준공년 월 일 1966년 11월 27일
5. 총공사비 18,482,296원
6. 부담금총액 12,013,492원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81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

(38) 고 시

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 공사시공로선 원효로—중림동간 도로
2. 공사의 종류 포장공사 (제2차)
3. 착공년월일 1966년 9월 10일
4. 준공년월일 1966년 11월 30일
5. 총공사비 11,625,927원
6. 부담금총액 7,556,852원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82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 공사시공로선 고대앞—홍등간
2. 공사의 종류 도로포장공사
3. 착공년월일 1966년 9월 6일
4. 준공년월일 1966년 9월 30일
5. 총공사비 4,742,150원
6. 부담금총액 3,082,397.⁵⁰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83호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위치증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기 196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구별	동사무소명	변경위치	종전위치
서대문구	안산제2동	홍제동 103의 10	홍제동 176의 1

四
四

◎서울특별시공고제142호

시유건물(철거조건부)매각입찰공고

- | | |
|------------|--|
| 1. 전 물 표 시 | 서대문구 불광동 287의8.9 지상 세멘벽돌조와줄 평가
전 사무실 1동 건평24평 |
| 2. 입 칠 일 시 | 서기 1966년 9월 8일 10시 |
| 3. 입 칠 장 소 | 당시 재무국 판재과 |
| 4. 입 칠 방 법 | 일반경쟁입찰 |
| 5. 입 칠 등 록 | 서기 1966년 9월 7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세
납세 필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
| 6. 입 칠 보증금 | 입찰금액의 1%이상 현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증수
표를 납부한다 |
| 7. 철거및내금납부 |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내금을 납부하고
10일 이내에 완전철거하고 정지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약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겠음 |

서기 196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2294

१३७

◎서울특별시공고제143호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도시계획사업 번대 토지구획정리지구는 별지 환지
화정 지정서 및 도면과 같이 환지 확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

별지 환지 확정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무과 및 영등포
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음

서기 196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특별시공고제144호

건설부고시 제2112호(서기 1965년 12월 13일)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 사업인 제3한강교 가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49호(서기 1966년 3월 24일)를 다음과 같이 경정 공고한다

1. 공사명 제3한강교 가설공사
2. 토지세목 별지조서와 같음
3. 공고기간 서기 1966년 9월 7일 (10일간)
서기 1966년 9월 16일

서기 1966년 9월 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土地調査

番號	分割前表示		分割後表示 (收用)		所有者		關係人			
	地番	坪數	目	地番	坪數	住 所	姓 名	住 所	姓 名	備 考
1 410-1	487	田	410-36	235	제기동 13-52	李德出				
						인현2가125	李鼎奎			
2 410-7	634	〃	410-38	313	오강53-2	張夢仁				
3 409-2	1,171	〃	409-3	58	인현2가125	李鼎奎				

4	410-25	625	〃	410-25	73	상림동 44-1	金英海					
5	408-5	351	〃	408-7	51	충무로 5가 7	張在哲					
6	408-3	36	坐	408-6	13	〃	〃					
7	406-2	71	〃	406-8	12	원효로 1가 17-2	金德源					
8	404-2	42	〃	404-7	13	〃	〃					
9	405-1	203	田	405-1	144	순화동 164 -2	高德姪					
10	404-6	466	〃	404-8	55	〃	〃					
11	399	767	坐	399-2	39	용산 갈월 75	金東柱	충정로 75 내부 20회차	농협 중앙 储蓄子	1,400,000 16,000,000 750,000	근처당	
12	405-2	2,216	田	405-2	521	신사동 196	李明福	종로 1가 36	시농협 협동조합	560,000	근처당	
13	412	2,846	〃	412-1	70	신사동 177	尹相煥					
	計				1,597							

◎서울특별시공고제145호

제도재산매각재입찰공고

다음표시 재산을 지방 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일반 공매함

1.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2. 입찰일시 서기 1966년 9월 12일 10:00
3. 입찰등록 서기 1966년 9월 10일 12:00까지 시세 납세필증을 구비하여 당시 재무국 관계과에 등록하여야 함
4. 재산설명 및 종합 서기 1966년 9월 10일 10:00 등록장소에 집합하여 현장종합과 동시에 설명함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지 10이상 시중은행 보증수표로서 동봉 입찰하여 야함
6. 개찰장소 및 일시 입찰장소에서 집행관이 예고함
7. 매각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지 1이상 경기예금을 하여야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지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3207

2295

(42) 공 고

낙찰자가 위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대금완납후 30일 이내에 매매물건을 완전 철거하고 그 장소를 정리하여야 함

8. 계약조항과 재산세목은 당시 판매파에 공시하고 있으니 상세한것은 이곳에 문의하시오

9. 재산의 표시

번호	재산의 표시	비고
1	광장선궤조 및 동부속시설	재산세목은 당시 재무국 판매파에 별도공시함
2	각종개화차 25대와 부분품 20종 (폐차 및 고장차량 포함)	
3	비품집기류 274점	

의 공고함

서기 1966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서울특별시공고제146호

도로운송차량의 임시검사 실시

시내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검사를 실시키로 되었으니 소정기간내에 짜짐없이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가. 영업용 화물 자동차
- 나. 자가용 화물 자동차
- 다. 급행버스(임시검사 수검차량제외)
- 라. 완행좌석버스

2. 시행기간

가. 영업용 자동차

(1) 서기 1966년 9월 15일—서기 1966년 10월 20일

서기 1966년 9월 15일 현재 계속검사를 받고 3개월이 경과된 차량 및
서기 1966년 10월 15일 내에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으로서 경과되는
날부터 5일이내

(2) 서기 1966년 10월 21일—서기 1966년 12월 20일

전항이외의 영업용 자동차로서 계속검사를 받고 3개월이 경과되는 날
부터 5일이내

나. 자가용 화물 자동차

(1) 서기 1966년 9월 15일—서기 1966년 10월 20일

서기 1966년 9월 15일 현재 계속검사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된 차량 및
서기 1966년 10월 15일 내에 6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으로서 경과되는 날
부터 5일이내

(2) 서기 1966년 10월 21일—서기 1967년 3월 20일

전항이외의 자가용 화물 자동차로서 계속검사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5일이내

3. 실시요령

자동차 계속검사가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한다

4. 본 입식검사를 기간내에 수검치 않은 차량은 도로운송 차량법 제51조 2항
에 따른 처벌규정에 의거 의법조치함

서기 1966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서울특별시공고제147호

건설부 고시 제1970(1965. 11. 8)로 사업계획 실시 인가된 성산 토지구획정
리 지구 인접 토지중 다음의 토지는 사업 시행상 본 사업 지구로 편입하여
동 지구 사업 계획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0일간 편입지구내

(44) 공 고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종합에 공한다

서기 196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기

1. 사업 계획 별채 성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계획서와 같음
2. 편입된지역 (내용 별채)

지 구 별	동 명	면 적	비 고
성 산 지 구	서대문구 성산동 일부 마포구 망원동 일부	약 51,000	

◎서울특별시공고제148호

체도재산매각재입찰공고

다음 표시 재산을 지방 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일반 공매함

1.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2. 입찰일시 서기 1966년 9월 24일 10:00
3. 입찰등록 서기 1966년 9월 23일 12:00까지 시세 국세 납세필증을 구비하여 당시 재무국 판매과에 등록하여야 함
4. 재산설명 및 종합 서기 1966년 9월 23일 14:00 등록장소에 집합하여 현장종합과 동시에 설명함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지 1이상 시중은행 보증수표로서 동봉 입찰하여야 함
6. 개찰장소 및 일시 입찰장소에서 집행판이 예고함
7. 매각 조건
 -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지 1이상 정기예금을 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지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가 위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입

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대금을 완납하여야하며 대금완납후 30일 이내에 예비불건을 완전 철거하고 그 장소를 정리하여야함

8. 계약조항과 재산세목은 당시 관재파에 공시하고 있으니 상세한 것은 이곳에 문의하시오

9. 재산의 표시

번호	재산의 표시	비 고
1	광장선(상후원—광장터간)궤조및 동부속시설	재산세목은 당시 재무국관재파에 별도 공시함
2	각종 객화차 25대와 부분풀 20종 (궤차 및 고장차량 포함)	
3	비풀집기류 274점	

위 공고함

서기 196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특별시공고제149호

서기 1962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698호로서 환지처분한바 있는 제2중앙도지 구획정리 남대문(남·북창) 지구중 환지처분 일부에 대하여 별기 환지 변경조서 및 도면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에 대한 조서와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무과 및 중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특별시공고제150호

13211

2297

전설부 고시 제2493호 (서기 1966년 6월 21일)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 사업인 이문동지내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공사명 이문동 지내 도로공사

토지의 세목 별지조서와 같음

서기 1966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土 地 調 價

순위	소재지	지번	지목	평수	소유자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5-204	답	224 ⁸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29 박문상
2	〃	164-8	〃	102	〃
3	〃	164-6	〃	112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4	〃	240-4	전	65	동대문구 이문동 162 서진순
5	〃	238-2	답	184	〃 330 박철성
6	〃	237-7	〃	223	〃 321 인부성
7	〃	237-9	〃	66	〃 33 황용순
8	〃	237-11	내	29 ⁷	〃 산4 우홍용
9	〃	220-28	답	21	동대문구 장위동 영등포구 성도동 324-2 임영조
10	〃	220-22	〃	43 ⁶	동대문구 이문동 161 한홍진
11	〃	220-12	전	23 ⁸	성북구 석곡동 213 오호용
12	〃	220-25	〃	15	〃 213 오호용
13	〃	220-18	답	99	동대문구 이문동 284-3 인부영
14	〃	220-11	전	52	〃 159 김호천
15	〃	217-2	답	197	〃 149 이철성
16	〃	216-2	〃	193	〃 330 인한갑
17	〃	215-1	〃	27 ⁸	귀속재산
18	〃	214-1	〃	232	동대문구 이문동 159 최진문

19	동대문구 이문동	213-1	◎	269	동대문구 계기동	67	조개육
20	◎	212-6	◎	12	◎		
21	◎	212-2	전	7	서울특별시		
22	◎	212-1	답	48	동대문구 이문동	330	인한갑
23	◎	209-1	◎	1327	◎	337	인한운
24	◎	208-1	◎	147 ¹	승인동 석곶동		吉田四成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곶동	42-1	◎	29	중구 무교동	13	이상우
		92-8	◎	40	동대문구 이문동	161	한홍섭
26	◎	92-5	◎	26	◎	175	최용학
27	◎	92-3	◎	48	◎	175	최용학
28	◎	92-6	◎	5	◎	169	고일동
29	◎	94-1	◎	81	◎	294	김점운
30	◎	88-3	◎	157	성북구 석곶동	178	박삼남
31	◎	83-1	◎	52	동대문구 이문동	232	김덕연
32	◎	82-1	◎	260	◎	217	진영극
33	◎	81-1	◎	14	◎	294	김점경
34	◎	80-1	◎	49	성북구 미아동	405	신상경
35	◎	79-1	◎	101	동대문구 이문동	257-56	박강호
36	◎	78-1	◎	75	성북구 장위동	69	홍삼록
37	◎	104-1	◎	111	◎	석곶동	230
38	◎	105-1	◎	61	동대문구 회기동	83	배금운
39	◎	106-1	◎	42	성북구 석곶동	356	고법운
40	◎	110-1	◎	67	◎	175	한재룡
41	◎	111-1	◎	10	◎	178	박기경
42	◎	112-1	답	48	◎	343	정기준
43	◎	113-1	전	264	◎	371	박개연
44	◎	116-1	◎	1	동대문구 창신동	144-2	염봉준
45	◎	114-1	답	236	성북구 장위동	47	민용선
46	◎	115-1	전	11	동대문구 창신동	144-2	염행종

(4 8) 공 고

48	성북구 석곶동	137-1	전	6	동대문구 창신동 144-2 염행중
49	〃	135-1	〃	124	종로구 안국동 9 윤자현
50	〃	134-1	〃	43	성북구 아남동5가108-22장영모
51	〃	167-2	답	40	중구 무교동 13 이상옥
52	〃	167-1	〃	24	국 유 치
5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6-209	내	23	동대문구 청량리 205-1 이동희
54	〃	255-2	전	50	〃 205-1 이배근
계					

◎서울특별시공고제151호

건설부 고시 제444호(서기 1963년 7월 11일)로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홍제동—녹번동간 도로확장공사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공사명 홍제동—녹번동간 도로확장공사
2. 토지 및 물건의 세목 (별지조서와 같음)
3. 공고기간 자 서기 1966년 9월 19일
(7일간)
지 서기 1966년 9월 25일

서기 1966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토 지 조 서

번호	개산의 표시		지목	지적	소유자		판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서대문구 녹번동	53-25	垈	28 53-20	金採道				
2	〃	55-26	〃	21 〃55-19	林順貞	중구 남대 운동2가	韓國產業 銀行		
3	〃	55-27	〃	29 마포구 아 현동 447	韓洛九	〃	〃		

물건조서

일련 번호	재산소재지		구조	승면적	수동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녹번동	53-20	세 베벽돌 조와습	19 ⁴ 지하3 ³	19 ⁴ 지하3 ³	53-20	금探道			
2	〃	55-19	세 베여와 조와습	15 ³⁰	8 ⁰⁰	55-19	林順貞	2가	한국產 銀行	
3	〃	55-20	〃	15 ³⁰	15 ⁰⁰	마포구아현동 447	韓洛九	140-1	〃	

◎서울특별시공고제152호

가축인공 수정사 자격시험 실시

축산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회 가축인공 수정사 자격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시험일자

- 가. 학술시험 서기 1966년 10월 27일
- 나. 실기시험 서기 1966년 10월 28일

2. 시험장소 농협중앙회 가축인공 수정소
(서대문구 불광동 산42번지)

3. 시험과목

축산수의 법규, 가축번식학, 가축위생학, 가축인공수정 및 실기

4. 응시자격

가. 중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1개월 이상 가축인공 수정 강습을 이수한자

5. 응시절차

가. 원서 접수기간

자. 서기 1966년 9월 26일 지. 서기 1966년 10월 15일 (20일간)

나. 원서 교부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산업국 농정과

다. 제출서류

13215

2299

(50) 공 고

- 1) 용시원서(소정양식) 1통
- 2) 이 력 서 1통
- 3) 학력증명서 1통
- 4) 건강진단서 1통
- 5) 신원증명서 1통
- 6)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통
- 7) 가축인공수정 강습회 수료증 또는 인공수정교육필증 1통
- 8) 사진(경합판) 2매

라. 용시료 100원(서울특별시 수입증지)

6. 기타 자세한 것은 당시 산업국 농정과에 문의 할 것

위 광고함

서기 1966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153호

내무부 고시 제23호(52. 3. 25)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광희동 지내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공사명 이문동지내 도로확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은 별지와 같음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1	서울특별시 중구 울지로 7가	13-2	대	0.8	서울특별시 중구 울지로 7가 13
2	〃	14-2	〃	27.7	〃 14
3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2가	96-9	〃	55	중구 광희동 2가 96

4	중구 광희동 2가	96-8	대	39.5	중구 광희동 2가 96	서인형
5	〃	96-10	〃	1.3	〃	95-2 김갑기
6	〃	95-2	〃	5.3	〃	95 신경식
7	〃	98-2	〃	22	〃	98 이건호
8	〃	93-2	〃	18.0	성북구 종암동 3-72	김영환
9	〃	91-2	〃	14	① 중구 회현동 1가 142-17 최종천 ② 〃 장충동 1가 11-1 윤옥술	
10	〃	90-3	〃	4.4	광희동 2가 90-3	최종철
11	〃	83-1	〃	17	〃 83	김종철
12	〃	75-2	〃	3.7	〃 75	박시철
13	〃	74-2	〃	4.3	〃 73	홍승태
14	〃	65-3	〃	9.5	〃 65-1	박준식
15	〃	56	〃	67.6	중무로 5가 67-1	村田保
16	〃	13-4	〃	0.4	소공동 62-5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17	〃	55-3	〃	33.6	국 유 지	
18	〃	55-4	〃	0.2		
19	〃	12-5	〃	7.3	중구 광희동 2가 12-3	강인남
20	〃	105-3	〃	0.4	〃 2가 105-1	오인영
21	〃	173-2	〃	1.7	〃 173-1	이남용
22	〃	192-2	〃	0.1	〃 192	김단복
23	〃	193-2	〃	5.3	국	
24	〃	239-1	〃	21.0	중구 광희동 2가 239	한원녀
25	〃	246-1	〃	25.1	〃 246-1	황두연
26	〃	250-1	〃	72.4	〃 251-1	백관업
27	〃	251-1	〃	3.5	〃 2가 251-1	하탕근
28	〃	252-1	〃	8	〃 2가 252-1	박양순
29	〃	258-1	〃	68.0	〃 2가 158	이보영
30	〃	260-2	〃	4.7	〃 2가 260-2	노영문
31	〃	262-1	〃	10	〃 2가 262-1	正木東淳

(52) 공 고

32	중구 광희동 2가	323-1	대	24.5	중구 광희동 2가 323-1 손옥근
33	〃	317-1	〃	2.1	〃 2가 317-1 조영근
34	〃	97	〃	39	〃 2가 96 김갑기
35	〃	97-1	〃	1.7	〃 2가 96 김갑기
36	〃	58	〃	88	〃 2가 96 김갑기
37	〃	58-1	〃	1.3	〃
38	〃	99	〃	25	성동구 신당동 391-9 손창열
39	〃	89-1	〃	5	중구 광희동 2가 89 竹內岩吉
40	〃	260-3	〃	20.5	〃 2가 260-3 최홍순
41	〃	245	〃	28	서대문구 흥제동 82-32 황두연
42	〃	244-1	〃	29	조선총독부
43	〃	90-2	〃	10	① 중구 회현동 1가 14-17 최종철 ② 〃 장충동 1가 11-7 윤옥순
44	〃	43-6	〃	2	중구 광희동 2가 43-6 채수해
45	〃	53-2	〃	67	〃 2가 53-2 장인택
46	〃	362-2	〃	6	〃 일현동 2가 57 조동윤
계		46필지		884. 7	

◎서울특별시공고제154호

시 유전물(철거 조건부) 매각입찰공고

1. 전 물 표 시 1) 중구 을지로7가 141 대 18.5평 위 지상 목조와습 2채
 전 사무실1동 건평1층 12.83평 2층 10.83평
 2) 종로구 사직동 262-88 지상목조와습 평가점주택1동
 전 평 20평
 3) 성동구 향당동 196-25 위치상 목조와습 2채 전 분가
 1동 건평 1층 21평 2층 21평
 4) 성동구 신당동 136-3 지상목조 와습 평가점 사무소
 1동 건평 28.2평
2. 입찰일시 서기 1966년 9월 28일 10시

3.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관제과
 4.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5. 입찰등록 서기 1966년 9월 27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서내, 국세
 납세 철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활이상 현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증수
 표를 납부한다
 7. 철거및대금납부 낙찰자는 계약일로 부터 3일이내에 대금을 납부하고
 10일 이내에 완전 철거하고 경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약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겠음

서기 196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서울특별시광고제155호**시영 버스 종업원 모집 공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참된 수도 교통을 만들기 위하여 시영 버스를 창업함에
 있어 이에 일한 종업원을 다음요령에 의거 모집함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1. 기본자격

시영 버스 사업의 근본 취지에 호응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머슴으로서 참된 시민 교통 전설에 온 정열과 땀을 쓴을수 있는 확고한 신
 념과 정신 자세를 가춘자

2. 모집 직종 및 일반 자격

모집직종	모집인원	용모자격
자동차 운전원	○○○명	자동차 1종면허 소지자로서 세대이 아닌 만20세 이 상의 남자
자동차 정비공	○○명	자동차 정비 경험이 풍부한 만23세 이상 45세 미만 의 남자

13219

2301

(54) 공 고

자동차·경비보조원	○○명	자동차정비 경험이 있는 만18세이상25세미만의 남자
차장	○○○명	용모단정한 만17세이상 20세미만의 미혼여자
지도원	○○명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
경비원	○○명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
배차원	○○명	" "
수위	○명	국민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
청부	○명	국민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20세 이상45세 미만의 남자
청소부	○○명	" "
타자원	○명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20세 이상 25세 미만의 타자에 능숙한 미혼여자
사환	○명	중학교 2년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16세 이상 20세 미만의 여자

단, 병역 해당자는 병역 의무를 펼 하였거나 면제된 자라야한다

3. 제출서류

가. 소정 응시 원서 1통

나. 이력서 1통

다. 운전원은 면허증 사본 1통 (접수후 원본 대조함)

정비원은 경력 증명서 1통

군경 유자녀는 원호청 말해 증명서 1통

라. 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명한판)

마. 응시 수수료 100원

기타 필요한 서류는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함

4. 원서 접수 기간

서기 1966년 9월 24일부터 서기 1966년 9월 28일 (4일간)

5. 원서 접수 장소

당시 관광운수국 운수사업과

6. 채용 방법

가. 면접시험 자동차 운전원, 경비원, 차장, 청소부, 수위, 청부, 사환,
지도원, 배차원, 경비원, 타자원

나. 필기시험 지도원, 배차원

다. 실기시험 타자원

7.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필기, 실기시험	1966. 10. 1	성동고등학교
면접시험	1966. 10. 2	〃

8. 합격자 발표

서기 1966년 10월 8일 시청 후정에 게시 공고함

9. 기타

- 가. 합격자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후 채용 하되 교육성적이 불량한자는 합격을 취소 한다
- 나. 자동차 운전원은 특별 우대 한다
-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라. 합격자는 시영버스 운행계획에 따라 순차로 채용 배치함
-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할것

◎서울특별시공고제156호

시유재산 매각 제입찰공고

다음표시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26조 1항 규정에 의거 일반공매함

-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 입찰일시 서기 1966년 10월 4일 10시
- 입찰등록 서기 1966년 10월 1일 12시까지 시세및 국세 납세필증을 구비하여 당시 재무국 관계과에 등록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현금 또는 시중은행 보증수표로서 동봉입찰하여야 함
- 개찰장소및일시 입찰장소에서 집행판이 예고함
- 매각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지 1이상 정기예금을

(56) 공 고

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서 3월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가 위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나) 낙찰자는 당시 소유인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당시가 철거 할때까지 원형을 변경하거나 철거 요청을 하지 못함

(다) 기타 지상물 명도는 일체 매수자의 책임으로 함

(라) 재산매각후 평수에 중감이 생길 경우에는 당시가 정하는 가격으로 추납 또는 반환함

7. 계약조항은 당시 판매파에 비치되어 있으니 상세 한것은 이곳에 문의하시오

재 산 의 표 시

번호	구 동 번 지	지목	평 수
12	동래문구 창신동 444-1	철	6.00평
14	〃 444-3	〃	32.00〃
16	〃 445-1	〃	14.00〃
18	〃 446-5	〃	7.50〃
19	사동구 마장동 533-3	〃	181.00〃
20	〃 행당동 192-23	〃	188.00〃
29	〃 41-3	〃	67.00〃
30	〃 77-2	〃	56.00〃
31	〃 82-2	〃	63.00〃
32	〃 145-1	〃	37.00〃
33	〃 148-1	〃	5.00〃
34	〃 168-9	〃	108.00〃
35	〃 158-2	〃	200.00〃

공고(57)

36	성동구 행당동	169-1	철	30.00%
37	〃	신8-20	〃	120.00%
38	〃	신22-3	〃	100.00%
43	〃	홍의동	192-21	〃
47	〃	마장동	533-2	〃
48	〃	화양동	110-2	〃
49	〃		111-3	〃
51	〃		112-1	〃
52	〃		112-2	〃
53	〃		114-2	〃
54	〃		115-2	〃
55	〃		119-2	〃
56	〃		121-1	〃
57	〃		132-1	〃
58	〃		135-4	〃
59	〃		148-2	〃
60	〃	모진동	1-2	〃
65	〃		131-2	〃
67	〃		132-2	〃
70	〃		135-1	〃
71	〃		117-3	〃
72	〃		136-2	〃
73	〃		136-3	〃
79	〃		197-2	〃
100	〃	구의동	439-2	〃
105	서대문구 응암동	244-116	내	225.00%

우 공고함

서기 1966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3223

2303

◎서울특별시공고제157호

세종로 지하도 공사 준공에 따른 전차 일부 운행계통 변경 공고
세종로 지하도 공사 준공에 따라 전차 일부 운행계통을 다음과 같이 변경실
시함을 공고 함

1. 변경 운행 계통

가. 부활 운행 계통

동대문<종로
율지로>마포

청량리~종로~영천

왕십리~율지로~영천

나. 폐지 운행 계통

돈암동~서울역

마포~세종로

영천~세종로

마포~서대문

청량리<종로
율지로>왕십리

2. 변경운행 일시

서기 1966년 9월 30일 17:30부터

서기 1966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서울특별시공고제158호

서기 1966년 총인구조사 실시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시민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오는 10월 1일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총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가정에서 먼저 식구수를 알아야 그 식구에 마주어 식량을
준비하고 또 의복이나 학비를 마련하는 것처럼 국가나 서울의 모든 시체도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수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만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므로서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시행하는 이 조사는 정확하게 조사 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
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나 기타 개

개인의 이해관계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조사원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6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서울특별시공고제159호

제도재산(시설)에 각입찰공고

다음표시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일반공매함

1.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2. 입찰일시 서기 1966년 10월 10일 10:00
3. 입찰등록 서기 1966년 10월 8일 12:00까지 시세국세납세필증을 구비하여 당시 재무국 관제과에 등록하여야 함
4. 재산설명및총찰 서기 1966년 10월 8일 14:00 등록장소에 접합하여 현장종람과 동시에 설명함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100이상 시중은행 보증수표로서 동봉 입찰하여야 함
6. 개찰장소및일시 입찰장소에서 집행판이 예고함
7. 배각조건
 -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100이상 정기예금을 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가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대금완납후 30일이내에 예매물건을 완전 칠거하고 그 장소를 정리하여야 함
8. 계약조항과 재산세목은 당시 관제과에 공시하고 있으니 상세한것은 이곳에 문의하시罢
9. 재산의 표시

번호	재산의 표시	비고
1	광장선(상후원—광장리간) 궤조 및 동부속 시설	재산세목은 당시 재무국관제과에 별도 공시함

13225

2304

(60) 광 고

위 공고 함

서기 196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공고제1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유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
고 관제조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성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공고제161호

서기 1963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756호로서 지정한 서울 도시계획
사업 면목 토지구획정리 지구 환지예정지를 별지 도면 및 조서와 같이 일
부 변경 지정한다

별지 도면 및 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동대문구청 건
설과에 비치하고 관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광 고

제3회 물류 위험물 취급주임 자격시험 합격자

危險物取扱主任資格試驗合格者

受験番號	姓 名	受験番號	姓 名	受験番號	姓 名
2002	張 潤 集	2004	李 承 福	3001	金 通 年
2003	金 大 中	2005	李 煕 重	3002	全 中 斗

3003	朴	植	4028	培	4070	羅
3005	申	駿	4029	端	4071	荀
3008	韓	基	4030	炳	4072	龍
5001	康	仁	4031	泰	4073	連
6001	姜	圭	4032	世	4074	陳
6002	李	一	4033	彬	4075	慶
6003	康	潤	4035	海	4077	正
6004	李	烈	4036	植	4078	相
4001	金	英	4040	基	4079	鍾
4002	尹	用	4042	英	4080	殷
4003	崔	鍾	4044	錫	4081	慶
4004	李	漢	4045	傑	4084	忠
4005	宋	彥	4046	玉	4085	誠
4006	金	大	4047	世	4090	鍾
4008	趙	祥	4050	烈	4091	曉
4009	黃	元	4051	煥	4092	慶
4010	趙	競	4052	基	4097	熙
4011	黃	昇	4053	翰	4099	變
4012	韓	崇	4054	朱	4100	烈
4013	李	求	4055	朴	4102	俊
4015	宋	寬	4056	姜	4104	俊
4016	金	世	4059	李	4106	志
4019	趙	明	4060	黃	4110	根
4021	黃	正	4061	崔	4112	長
4022	韓	勝	4062	命	4113	學
4023	李	炳	4063	閔	4114	龍
4024	洪	昌	4066	朴	4115	志
4025	曹	在	4068	洪	4116	均
4027	李	相	4069	辛	4117	善
	宋	康				夏
	韓	福				
	金	京				
	趙	炳				
	黃	元				
	黃	應				
	崔	性				
	朴	圭				
	洪	慶				
	曹	炳				
	李	昌				
	閔	慶				
	閔	炳				
	朴	昌				
	洪	淳				

4118	元	詰	4159	宇	圭	4198	私
4119	金	德	4160	健	大	治	治
4124	金	培	4161	哲	貴	鐵	鐵
4125	魯	雄	4162	千	哲	煉	煉
4126	元	寬	4163	子	千	均	均
4127	李	鮮	4165	英	洋	館	館
4128	林	源	4166	瓊	炳	學	學
4129	金	權	4167	瓊	健	浩	浩
4130	鄭	元	4168	在	權	赫	赫
4131	趙	夏	4171	根	德	興	興
4133	吳	換	4172	根	玄	東	東
4134	金	奎	4173	守	基	井	井
4135	黃	俊	4175	治	勝	靖	靖
4136	徐	東	4176	淳	甲	學	學
4137	吳	承	4177	日	俊	浩	浩
4140	崔	興	4179	錄	天	赫	赫
4142	趙	得	4181	永	漢	植	植
4145	金	榮	4182	甲	俊	俊	俊
4146	宋	夢	4184	朴	天	善	善
4148	李	祖	4185	金	漢	益	益
4149	李	相	4186	李	植	永	永
4150	金	錫	4187	崔	俊	旭	旭
4151	姜	濟	4188	宋	宋	鍾	鍾
4153	尹	相	4189	李	李	植	植
4154	金	錫	4190	全	全	舜	舜
4155	植	濟	4191	李	李	麟	麟
4156	崔	相	4192	禹	禹	高	高
4157	崔	命	4193	禹	禹	具	具
4158	崔	五	4196	禹	禹	金	金

4240	鄭 鶴 卷	4245	鄭 永 变	4249	吉 塩
4242	姜 仲 模	4246	宋 壽 榮	4250	許 河
4243	李 順 興	4247	方 永 泰		計 190名
4244	金 惠 炎	4248	盧 褒 酷		

서기 1966년 9월 24일

경찰국장

직인 개각 통보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 직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

가. 직인명

서울특별시장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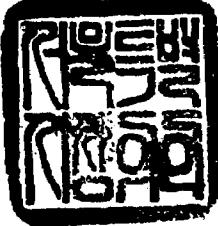
나. 개인정보 사용일자 서기 1966년 10월 4일부터

다. 구직인 폐인일자 서기 1966년 9월 30일까지

서기 1966년 9월 30일

총무과장

폐인인현

폐인일자	1966. 9. 30
폐인사유	마멸로 인하여
직인인	제인
	

13229

2306

(64) 광 고

직 인 일 형

사 용 개 시 일 · 자	1966. 10. 4
명 칭	서 울 특 별 시 장 의 인
직 인	제 인

